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구단100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61,095,810원, 농어촌특별세 12,797,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8

가. 원고는 2002. 2. 7.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유한회사[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 5.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0주(57.69%)를 취득(이하 '이 사건 주식취득'이라 한다)하여 최초로 과점주주(100%)가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8. 4. 10. 원고에게 위 회사의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가액에 원고의 주식소유비율 1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1,095,810원(본세 115,530,560원, 가산세 45,565,250원), 농어촌특별세 12,797,110원(본세 10,714,260원, 가산세 2,082,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8. 10. 16. 기각되었다.

라. 한편, 2016년 말경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지분은 종전 42.31%(총 주식 26,000주 중 11,000주)에서 89.17%(23,185주)로 증가되었고, 나머지 주식지분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자녀, 친족, 손자, 배우자)이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3. 11. 28.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위 회사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그 무렵 이미 과점주주였고, 다만 일부 주식을 D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2016년경 [redacted]지방국세청에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

1) 당초 주식회사 E에서 그 명칭이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 순차로 변경되었다가, 2011. 9. 6. B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8

여세를 납부하고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원인으로 그 주식명의를 원고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설령 위 주식의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위 주식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 납부되었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명전환된 것인바,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조사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8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이 사건 처분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6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8

경 최초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04. 12. 9.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을 그 일부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그 무렵 이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원고의 2016년경 주식지분비율의 증가는 실질주주인 원고가 당초 명의신탁해두었던 자신의 주식에 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2].

따라서, 원고가 2016년경 주식지분의 증가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2002. 6. 30.경 이 사건 회사(당시 주식회사 E)의 주주명부(총 주식 26,000주)에는 주주로 C(10,000주), I(3,000주), J(2,000주), K(1,000주), L(10,000주)이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I, J는 이사, K은 감사였고, C는 위 회사를 외국인투자단지인 M산업단지에 입주시키기 위하여[3] 지인인 호주 국적의 L에게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명의신탁하면서, 2002년 3월경 L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관련한 모든 행위의 대행을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L은 위 회사에 투자한 00주를 C에게 조건 없이 양도함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백지 양도각서를 받아두었다.

○ C는 2003. 11. 28.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채무(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02. 10. 25.자 417,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등)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 주식 및 공장건물 등을 양도하면서, 원고에게 L으로부터 받은 위 위임장 및 백지

2)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므로 원고의 위 가정적인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다만, 2013. 5. 1. 위 외국인투자지역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위 투자지역 내의 공장부지를 2015. 7. 27. 국유재산매매방식으로 매수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8

양도각서를 교부하여 주고, 자신 명의의 주식 10,000주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으며, 2004. 12. 9. 위 회사 주식의 명의는, 위 I 명의의 3,000주가 D에게로, J 명의의 2,000주가 N에게로, K 명의의 1,000주가 O에게로 각 이전되었는데, 당시 D, O는 위 회사의 이사였고, N은 원고의 동생이자 위 회사의 감사였으며 위 명의이전 과정에서 이들이 위 각 주식 명의인들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 그 후, 원고에게, O 명의의 위 주식은 2014. 11. 27. 그 주식명의가 이전되었고, D, N, L 명의의 위 각 주식도 2016. 6. 7. 그 주식명의가 이전되어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의 소유자가 되었는데[4], 그 과정에서 원고가 O, D, N, L에게 각 주식대금을 지급하여 준 사실은 없고, O, D, N, L이 각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를 취득한 이후 각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O, D, N은 원고와의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 또한, 2014. 12. 1. 개최된 '15억 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의안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서는 원고에게 위 15억 원 전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당시 주주(사원) 명의인이었던 D, N, L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 한편, [redacted]지방국세청에서는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6. 4. 29. 'O, L, D, N 명의의 주식은 원고가 이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주식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국세청에 제출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6. 5. 2.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4) 다만, 2016. 12. 29. 그 중 일부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P 외 5명에게 증여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8

○ 원고는 2003. 11. 28.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계속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현재도 원고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위 회사의 지분 모두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